

# 中國公案小說小考

- 概念과 起源을 中心으로 -

高淑姬 \*

---

◁ 목 차 ▷

I. 머리말

II. 公案의 概念

III. 公案小說의 起源

IV. 맺음말

---

## I. 머리말

敘事文學으로서의 소설은 인간의 출생, 생활, 삶의 양상, 행동과 의식 구조의 변화를 이야기식으로 풀어나간다. 즉 인간과 그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반영하며, 아울러 직접적·간접적으로 현실과 대립적 상황에 처한 인간의 염원과 이상의 공간으로써 그 생명력을 유지해 온 것이 바로 소설이다. 소설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인간 세계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기타 문학장르보다 우월한 위치의 현실감과 비판의식을 지녀왔다.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公案小說 역시 그러한 소설적 특성을 바탕으로 현실세계 반영이라는 소설적 역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

현실을 살아가는 다양한 인간들간의 관계 속에서 불가피하게 출현하는 대립·갈등의 생생한 현실적 양상과 그로 인한 사건들은 바로 公案小說의 중심 제재이다. 기타 小說類에 비해 公案小說에는 현실과 시대에 대한 강한 밀착성, 그리고 현실에 반한 민중의 희망과 이상이 극명하게 반영되어 있다.

중국의 독특한 봉건전제주의 하에서 통치자는 자신의 권의 수호를 위해 도덕 관념과 법률을 제정해서 각종특권을 행사했고, 그에 반하여 무력했던 일반 백성들은 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특권 계층인 권세가, 지주, 고관들에 의해 정신적·육체적 억압을 받으며 항거조차 못하고 비참하게 생활해 왔다. 이렇듯 당시의 법률과 법사상은

---

\* 숙명여자대학교 중문과 강사

봉건통치자와 일부 계층의 이익 옹호에만 그 역할을 다할 뿐이었다. 봉건 지배층은 정당하게 실행되어야 할 법을 악용하여 단지 자신들의 현실적 이익과 욕망 성취를 위해 일반 백성을 억압하고 유린해 왔고, 그러한 현상이 보편적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강자의 약자 지배라는 이러한 암울한 상황하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백성들이 점점 늘어났으며, 결국 그들은 현실을 인식하고, 그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희망과 의지를 지니게 되었다. 그들은 好漢, 俠客이 등장하여 현실적 고통을 제거해주고 특권 계층에 대해 보복을 가하기를 바라는 한편, 清官<sup>1)</sup>이 등장하여 억울한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법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열망했다. 그로 인해 중국소설사에는 俠義類小說과 公案類小說이 출현하여 형성·발전하게 된 것이다.

後者로 인해 출현한 公案小說은 訴訟事件을 근간으로 清官이 그 사건을 법에 근거하여 해결하고 판결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며, 법의 집행자 청관의 剛正不阿(강직하여 아첨하지 않음), 清廉潔白, 執法如山(산처럼 확고하게 법을 집행함)과 사건 해결능력 등을 칭송하고, 동시에 사건의 발생과 진행·해결과정을 통해 당시 사회를 반영한다.

본고에서는 민중의 희망과 이상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公案小說이라는 서사양식에 대해 기초적인 작업을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公案의 概念을 여러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 그것의 概念 정립을 바탕으로 起源이라는 측면에서 公案小說을 들여다보겠다. 완전한 소설로서의 문학성을 갖추기 이전의 公案小說을 살핀에 있어서는 司馬遷 《史記》의 〈循吏列傳〉〈酷吏列傳〉을 주요 텍스트로 삼아, 그곳에 내포된 公案小說의 起源성과 사건 해결의 주체이며 法의 主宰자인 清官의 形象을 살필 것이다.

## II. 公案의 概念

中國小說史上 제재선택 측면에서 독특성을 지닌 公案小說의 '公案'이라는 어휘는 매우 다양한 개념을 지녀왔다.

우선 《辭海》에 나타난 '公案'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 1) 소위 清官이란 주로 清正廉明하고 秉公執法한 정부 관리를 뜻한다. 역대 문학 작품의 묘사를 통해 볼 때, 清官의 강하고 권세 있는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약자를 돕고 난폭한 이에 대항하며 공명정대하게 법을 집행하는 품격이 매우 많은 관심과 찬양을 받았다. 清官形象이 문학 작품 속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경우는 결코 많지 않았다. 주로 包拯, 海瑞, 施仕綸, 于成龍, 彭朋, 劉墉 등으로, 이들은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인물들로 생전에는 명예를 누렸고, 사후에는 칭송과 예우를 받았다. 苗橫明 〈清代公案俠義小說與清代中後期大衆文化心理〉: 《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 1999년 제3기, 131쪽

관부의 공문서로, 법령에 따라 시비를 판단하는 것을 公案이라 한다. 세인은 중요한 논쟁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비록 관서의 공문서가 아니어도 역시 왕왕 公案이라 칭했다. 또한 관서에서 공문서를 심리할 때의 책상을 역시 公案이라 한다. (公府之案牘, 依法令而判斷是非, 謂之公案, 世人對於有重要爭執之事件, 雖非官署案牘, 亦往往稱公案, 又官署理案牘之几案, 亦曰公案.)<sup>2)</sup>

이처럼 《辭海》에서는 '公案'의 의미를 간략하게 3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公案'은 법에 근거하여 어떤 일이나 사건의 시비를 판단하는 관부의 공문서이며, 당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세인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이며, 사건(안건)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책상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3가지 의미에서 추출할 수 있는 공통분모는 바로 某種의 사건이다.

《漢語大詞典》에는 '公案'의 의미가 매우 다양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公案'이라는 어휘의 多義性을 엿볼 수 있다.

- ① 관부의 사건 문서이다. : 宋 蘇軾《辨黃慶基彈劾札子》：“오늘날의 公案은 지금 호부에서 그것을 취해 죄상을 조사할 수 있다.”…  
(①官府案件文卷, …宋 蘇軾《辨黃慶基彈劾札子》：“今來公案, 見在戶部, 可以取索案驗.”…)
- ② 사건으로, 분쟁이 있는 사건이다. 宋 劉克莊《賀新郎·送陳子華赴眞州》詞：“복망신주로에서 이 사건을 명확하게 판결하는 것을 누구에게 분부할까?”… (②案件, 有糾紛的事件, 宋 劉克莊《賀新郎·送陳子華赴眞州》詞：“北望神州路, 試平章這場公案, 向誰吩咐?”…)
- ③ 관부에서 공사를 처리할 때 사용하던 책상이다. 元 無名氏《陳州糶米》第四折：“빨리 책상을 깨끗하게 해라, 대인이 오신다.”… (③官府處理公事時用的几案, 元 無名氏《陳州糶米》第四折：“快把公案打掃的乾淨, 大人敢待來也.”…)
- ④ 화본·회곡·소설 분류 중의 하나이다. 宋 灌圃 耐得翁《都城紀勝·瓦舍衆伎》：“說公案은 모두 擲刀趕棒과 發跡變泰의 일이다.”… (④話本, 戲曲, 小說的分類之一, 宋 灌圃 耐得翁《都城紀勝·瓦舍衆伎》：“說公案皆是擲刀趕棒及發跡變泰之事.”…)
- ⑤ 불교 선종에서 선배 조사의 언행범례를 지칭한다. 宋 陳善은 《捫虱新話·讀書當講究得力處》에서 “고서에는 잘못된 곳이 적지 않은데, 이는 곧 선가의 언행범례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이를 자세히 고찰하고 연구한 적이 없다.” (⑤佛教禪宗指前輩祖師的言行範例, 宋 陳善《捫虱新話·讀書當講究得力處》：“古書中頗有贊說處, 便是禪家公案, 但今人未嘗體究耳.”…)<sup>3)</sup>

2) 《辭海》(合訂本) 中華書局, 香港, 1988, p152.

3) 《漢語大詞典》第二卷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3), 69-70쪽

《漢語大詞典》의 '公案'에 대한 설명은 주로 宋元時期에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의 다섯 부분에 해당하는 '公案'의 개념 설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앞쪽의 네 부분은 유사개념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辭海》에서 언급되었던 '사건'의 의미가 드러난다.<sup>4)</sup> 그러나 마지막 부분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禪宗의 話頭類의 성격을 지니므로, 문학사적 '公案' 개념 정리에 있어서는 관련성이 없는 부분이다. 다시 前者의 네 경우는 관부와 관련된 ①②③의 경우와 문화적 경향이 강한 ④의 경우로 양분할 수 있다. 前者의 경우는 '公案'이 관부의 공문서로서 특히 刑事·民事 訴訟事件과 관련된 문서 혹은 그 해당 사건을 의미하며, 後者의 경우는 '公案'이 소설의 제재로서 '칼을 들고 몽둥이로 치며 입신출세한다'는 내용을 지니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公案'의 이중적 개념을 엿볼 수 있으며, 아울러 현실에서 발생한 사건(訴訟事件)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통해 兩者 개념 사이의 연계성을 찾을 수 있다.

'公案'이라는 명칭은 宋元時期 宋元話本 분류중 하나인 小說의 '說公案'에서 나왔다는 說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이다. 앞의 《漢語大詞典》에서 ④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그 경우이다. '公案'의 명칭이 宋元時期에 처음 출현하였으므로 당시상황을 알 수 있는 문헌을 통해 '公案'의 概念을 상세히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무릇 괴뢰에서는 연분영괴고사, 철기공안류를 연출하며, 그 화본은 잡극과도 같고 애사와도 같으며, 대개 허구가 많고 사실은 적다... (宋 灌圃 耐得翁 《都城紀勝·瓦舍衆伎》: 凡傀儡敷演烟粉靈怪故事、鐵騎公案之類, 其話本或如雜劇, 或如崖詞, 大抵多虛少實,...)<sup>5)</sup>

실화에 사가가 있는데, 하나는 소설로, 은자이라고 하며, 연분, 영괴, 전기가 있다. 실공안은 모두 박도간봉과 발적변태의 일이다. (《都城紀勝·瓦舍衆伎》: 說話有四家: 一者小說, 謂之銀字兒, 如烟粉、靈怪、傳奇, 說公案, 皆是搏刀趕棒, 及發跡變榮之事.)<sup>6)</sup>

무릇 괴뢰는 연분, 영괴, 철기, 공안, 사서 역대 군신장상 고사의 화본을 연출하며, 강사이기도 하고 잡극이기 하며 애사와도 같다. (宋 吳自牧 《夢梁錄·百戲伎藝》: 凡

4) ①②③④에 해당하는 의미 중에서 ③은 관부와 관련성은 있으나, '사건'이라는 의미측면에서 직접적 관련은 없다. 그러나 의미분류상 관부와 관련성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동일선상에 두었다.

5) (宋) 孟元老等著 《東京夢話錄》(外四種)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98), 86쪽

6) 上揭書, 86쪽

傀儡, 敷演烟粉, 靈怪, 鐵騎, 公案, 史書歷代君臣將相故事話本, 或講史, 或作雜劇, 或如崖詞.)<sup>7)</sup>

설화는 '설변'이라 하며 네가지가 있으나 각각 차이가 있다. 소설은 '은자아'라고 하며 연분, 영괴, 전기, 공안, 박도간봉발적변태의 일 같은 것들이다. (《夢梁錄·小說講經史》: 說話者, 謂之“舌辯”, 雖有四家數, 各有門庭. 且小說名“銀字兒”, 如烟粉, 靈怪, 傳奇, 公案搏刀趕棒發跡變泰之事.)<sup>8)</sup>

이처럼 '公案'의 명칭을宋代 문헌을 통해 살펴보면, 그 의미가大同小異하다.<sup>9)</sup> 결국 公案은 說話四家中 하나로써 「搏刀趕棒發跡變泰」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후세 公案小說이 지니는 訟事, 訴訟事件, 犯罪事件과 관련된 의미는 보이지 않는다.<sup>10)</sup>

현존하는 宋元時期的 작품이라 할 수 있는 公案類小說로는 《錯斬崔寧》, 《簡帖和尚》<sup>11)</sup>, 《合同文字記》, 《三現身包龍圖斷冤》, 《錯認尸》, 《計押番金錢產禍》, 《宋四公大鬧禁魂張》, 《勘皮靴單證二郎神》 등의 10여종<sup>12)</sup>이 있으며,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錯斬崔寧》, 《三現身包龍圖斷冤》, 《宋四公大鬧禁魂張》, 《勘皮靴單證二郎神》이다.<sup>13)</sup>

네 작품 중 대표적인 清官 包拯이 등장하는 《三現身包龍圖斷冤》의 내용을 통해 소송사건으로서의 '公案'의 개념을 살펴보자. 《三現身包龍圖斷冤》은 남녀가 사통을 하고 둘이 제책을 써서 여인의 남편을 죽이는 謀殺事件이다.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奉符縣의 押司<sup>14)</sup> 孫文이 눈 속에서 쓰러져 꿈몽 얼어있는 同姓의 한

7) 上揭書, 304쪽

8) 上揭書, 306쪽

9) 宋 羅輝의 《醉翁談錄》에도 '公案'의 명칭이 보인다. 목차에 '私情公案'과 '花判公案'이 있는데, 전자에 해당하는 작품은 1편, 후자에 해당하는 작품은 15편이다.

10) 陳汝衡은 《說書史話》에서 '公案小說'의 개념에 대해 폭넓은 해석과 이해를 했는데, 그것은 오늘날 '法制文學'에 근접하는 것이었다. '法制文學'이란 대부분 민사사건, 형사사건을 다루며 그 안에서 사회와 인생을 반영하는 문학이다. 그는 公案小說의 내용이 왜 번잡해졌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했고, 公案과 依義의 함유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를 제공했다. 張國風, 《公案小說漫話》(香港, 中華書局, 1989), 4쪽 참조

11) 張暎은 〈發跡變泰話本の '公案'性에 관한 新探〉에서 《錯斬崔寧》, 《簡帖和尚》에는 訴訟事件이 묘사되어 있으며 전자에 나타난 '公案'명칭은 '형사사건'과 관련된 訴訟事件이고 후자는 '민사상의 訴訟事件'을 가리킨다고 했으며, 총괄하여 回本소설 속에서의 '公案'명칭은 '訴訟事件'을 의미한다고 서술했다.

12) 이 소설들은 남송과 원시기의 정치부패, 사회불안, 상품경제발전 등에 따른 범죄 증가 등의 현실을 반영하고 당시 시민계층의 사상과 예술취향을 드러낸 것이다. 王俊年 〈依義公案小說의 演化及其在晚清繁盛的原因〉: 《文學評論》, 1992, 4期

13) 蕭相愷 《宋元小說史》(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97), 131쪽

젊은이를 구해주고, 그 젊은이가 것처럼 縣의 押司로 일하도록 해준다. 그래서 孫文을 大押司, 젊은이를 小押司로 칭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배은망덕하게도 孫文의 아내와 사통을 하고, 결국 2인은 끝없는 욕망으로 인해 모략을 써서 孫文을 살해한다. 후에 孫文의 원혼은 세 차례나 現身하여 하녀 迎兒에게 원한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고,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시구를 건네준다.

큰 여자 작은 여자, 앞사람이 일구고 뒷사람이 먹네. 삼경의 일을 알고 싶으면 불 밑의 물을 들어서 열어보길. 내년 이삼월에 포사가 이 일을 해결하리.(大女子, 小女子, 前人耕來後人餌. 要知三更事, 撥開火下水. 來年二三月, “包巳”當解此.)<sup>14)</sup>

사건 해결자 包拯 역시 꿈에 ‘要知三更事, 撥開火下水.’라는 글귀를 보게된다. 迎兒는 옛 주인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남편 王興에게 縣에 가서 고소를 하게 하고, 결국 王興은 이 사건의 해결자 包拯의 면전에 무릎을 꿇고 진술을 하게된다.

왕흥이 아뢰었다. “소인의 처는 원래 본 현의 대손암사를 모셨던 사람으로 영아라고 합니다. 점쟁이가 대손암사께서 그 해 그 달 그 날 삼경에 죽을 운명이라고 하였는데, 뜻밖에도 과연 돌아가셨습니다. 마님께서는 지금의 소손암사와 재혼을 했고 영아를 소인에게 시집보냈습니다. 소인의 처는 처음에는 손씨 대의 부뚜막 아래에서 이진 암사님이 모습을 드러낸 것을 보았고……두번째는 밤에 손씨 대 문 앞에 갔다가 또 이진 암사님을 만났습니다.……세번째는 岳廟에 速報司判官이 출현하여 이 종이를 소인의 처에게 주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판관의 모습은 바로 대손암사님으로, 원래 제 처가 옛날에 모시던 어르신이셨습니다.(王興稟道“小人的妻子, 原是伏待本縣大孫押司的, 叫做迎兒. 因算命的算那大孫押司其年其月其日三更三點命里該死, 何期果然死了. 主母隨了如今的小孫押司, 却把這迎兒嫁出如小人爲妻. 小人的妻子, 初次在孫家底下, 看見先押司現身……第二次夜間到孫家門首, 又遇見先押司……第三遍岳廟里速報司判官出現, 將這一幅紙與小人的妻子, 又屬附與他申冤. 那判官爺模樣, 就是大孫押司. 原是小人妻子舊日的家長.)<sup>15)</sup>

包拯은 王興의 진술을 바탕으로 원혼이 제시한 수수께끼 식 시구를 해석하여 범인들을 잡아낸다. 이 작품에는 訴訟事件의 절차가 체계적으로 전개되지는 않았지만, ‘公案’ 개념상의 訴訟性을 충분히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사건의 정황이 매우 상세히 표현되어 있으며, 범죄 행위자를 직접 표면화하지 않고 결말에 이르러서야 범인과 고

14) 宋代에 縣에서 문서와 소송사건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관리이다.

15) 馮夢龍 《警世通言》(北京, 北京十月文藝出版社, 1995), 186쪽

16) 馮夢龍 《警世通言》(北京, 北京十月文藝出版社, 1995), 188쪽

묘한 범행방법을 드러내어 보는 이로 하여금 찬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비록 작품 내에 점쟁이의 예언, 꿈의 계시, 수수께끼 식 시구 등의 내용상 비진보적 측면이 보이지만, 사건 전개와 해결과정에 있어 묘미를 가하는 그런 요소들의 역할은 절대 경시할 수 없다.

이처럼 《三現身包龍圖斷冤》에는 등장인물 측면에서 사건의 주체, 사건 해결의 조력자, 사건의 해결자가 등장하여 사건의 발생과 정황, 사건 해결의 과정과 판결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三現身包龍圖斷冤》을 위시한 위 네 편의 고사들은 訴訟事件과 그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후세 公案小說 속의 '公案' 개념과 일치한다. 또한 위에 언급된 고사들은 제재측면에서 訴訟事件과 문학과의 결합이라는 '公案'의 성격을 보여준다.

이렇듯 公案類小說의 중심 축을 이루는 訴訟과 訟事는 옛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도덕적 타락의 산물로 인식되었다. 사실 모든 인간들은 소송이 없는 사회, 즉 無訟의 사회를 꿈꾸지만 이는 이상에 불과해서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인간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분출되는 이기심과 욕망으로 이런 사회현상을 발생시켰고, 그런 현상의 양상 역시 다양화, 극대화되었다.

사회현상의 하나로서 이러한 소송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전통시대 사상가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했다. 하나는 性善論者의 해석이며, 하나는 性惡論者의 해석으로, 兩者는 인간의 본성론에 있어서는 상이한 견해를 취하지만, 쟁탈과 쟁송의 발생 원인 해석에 있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여준다. 즉 쟁탈과 쟁송은 도덕이 파괴되었다는 표시이자 결과이며, 인간 고유의 善端이 상실되었거나 혹은 고유의 惡端이 개조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訟事의 발전 추세에 대해서도 일치된 견해를 취하여, 옛사람들은 도덕 수준이 높아져 송사가 적었으며, 시대가 내려올수록 사람들의 도덕 수준이 낮아져 송사도 더욱 극성을 부렸다고 보았다.<sup>17)</sup>

이제 訴訟事件과 그 判決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대표적 公案小說集인 明代의 《百家公案》과 清代의 《龍圖公案(一名包公案)》속 사건들을 통해 訴訟事件이 중심 축을 이루는 '公案'의 개념과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百家公案》 제11회(判石牌以追客布)의 내용을 보자. 宋 仁宗때 柴勝은 장사를 하러 떠나 개봉부 吳子琛의 객점에 묵게되고, 이웃의 夏日酷이란 자가 물욕으로 인해 시승의 배를 훔친다. 시승은 객점 주인이 도적과 공모했다고 여겨 개봉부

17) 範忠信, 鄭定, 詹學農 共著, 李仁哲譯 《中國法律文化探究-情理法과 중국인-》(서울, 一潮閣, 1996), 233쪽

에 끌고 가 소송을 제기하고, 판관 包拯은 객점주인에게 장물이 없다는 이유로 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곧 객점 주인 오자침을 불러 가까이가 말했다.“…… 어찌 어제 밤 내가 술을 몇 잔 마셔 취한 것을 보고 이처럼 불량한 생각으로 도적과 공모하여 내 배 세 짐을 훔칠 수 있소. 내 생각엔 당신이 훔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 절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야. 지금 나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난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겠어.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 오자침은 설명했다. “내가 객점의 주인으로 객을 재워 생계를 꾸려 나가는데 어찌 도적과 공모해서 물건을 훔칠 리가 있겠소.” 시승은 결코 들으려 하지 않고 곧장 포공의 관아로 끌고 가 고소했다. (就叫店主吳子琛近前告訴曰“…… 何得昨夜見吾醉飲幾盞。行此不良之意。串盜來偷我布疋三担。吾意汝爲典守之人。決亦難辭其責。今不與究來還。吾必汝興訟。那時悔不及矣。”吳子琛辨說曰“吾爲店主。以客來爲衣食之本。安有串盜偷貨之理。”柴勝並不肯聽。一直扭到包公廳前首告。)<sup>18)</sup>

후에 包拯은 계책을 생각해 내어 관아 앞 돌비석을 놓고 재판을 진행하여 재판장에 무단 침입했다는 명목 하에 구경꾼 4인을 잡아 벌금을 내게 한다. 그 중 배를 벌금으로 가져온 이가 있어 배의 판로를 추적한 결과 진범인 夏日酷을 잡게 되고, 그를 고문하여 자백을 받아 낸 후 充軍의 형벌을 가한다.

이 작품에는 원고 柴勝과 피고 吳子琛 사이의 오해와 갈등이 소송 사건으로 이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包拯의 판관으로서의 지혜가 상세히 드러나 있다. 이 곳에서 包拯이 범인 검거를 위해 사용한 돌비석 재판에서 한국 전래 동화 속 망부석 재판 모티프를 볼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또한 객사인 柴勝의 ‘興訟’이라는 말을 통해 당시 일반 민중이 자신의 권익 수호와 불이익에 저항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보편화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龍圖公案》〈夾底船〉을 살펴보면, 그 대략적 줄거리는 이러하다. 상인 寧龍은 하인 季興을 데리고 많은 비단을 사서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공 單貴와 葉新의 계약으로 술에 취해 물에 빠지게 된다. 하인은 죽으나, 다행히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寧龍은 包公에게 고소를 하고, 결국 죄인들은 구속되며, 包公의 심문이 시작된다.

심문하기를 “단귀, 섭신 너희 둘은 영웅과 하인을 모살하고 은을 얼마나 얻었느냐?”하니 단귀가 말했다. “소인은 결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어찌 영웅이란 자를 알겠습니까?” 포공이 “영웅이 배를 세 내어 타고 강서로 가다가 중도에서 모살당했다고 말하는 이

18) 明 安遇時 編集, 朴在淵 校注 《百家公案》(春川, 江原大學校出版部, 1994), 39-40쪽



가 있는데, 어찌 발뺌하느냐?” 하니 단귀는 “영용이 배를 세 내어 타고 가다가 중도에 약탈을 당해 소인의 목숨을 자칫하면 보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어찌 그를 돌아보겠습니까?” 라고 답했다. 포공은 화가 나서 말했다. “그를 술에 취하게 해서 강물에 던져 버리고는 여전히 발뺌을 하는가?” (問)單貴, 葉新, 你二人謀殺寧龍主僕二人, 得銀多少? 單貴道“小人並未謀人, 知甚寧龍?” 包公道“方有人說係他代寧龍雇船江西, 中途謀殺, 何故強爭?” 單貴道“寧龍雇船, 中途被劫, 小人之命險不能保, 安顧得他.” 包公怒道“以酒醉他, 丟入波心, 還道等口便.”)19)

이처럼 죄인들은 죄상을 자백하지 않고 모든 사건이 도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극구 주장하여, 결국 包拯은 2인에 대해 분리 심문을 실시한다.

다음날 일찍이 포공은 당에 올라 단귀와 섭신을 불러 단귀는 동쪽 낭하에, 섭신은 서쪽 낭하에 서게 한다. 먼저 섭신을 불러 심문했다. “그 날 밤 도적이 배를 약탈했을 때 도적이 몇 명이었느냐? 어떤 옷을 입었고, 생긴 건 어떠했느냐?” “삼경쯤 네 사람이 모두 배에서 깊은 잠에 빠졌는데 갑자기 도적 무리들이 배를 강 한복판으로 몰았습니다. 한 사람은 키가 크고 푸른 옷을 입었으며 얼굴에 칠을 했는데, 먼저 배에 올라왔고, 갑자기 3척의 작은 배가 둘러쌌습니다. 영용과 그의 하인은 도적이 배에 오르는 것을 보고 놀라서 배 끝으로 가 강물에 뛰어 들었습니다……” ……단귀가 말했다. “삼경쯤으로, 도적이 배를 강 한복판으로 몰고 갔고, 사면을 작은 배 7, 8척이 모두 에워쌌습니다. 붉은 옷을 걸친 한 녀석이 배로 뛰어와 영용과 하인을 물 속에 집어 넣었습니다……” (包公次早升堂, 取單貴二人, 令貴站立東廊, 新站立西廊, 先呼新聞道“是夜賊劫你船, 賊人多少? 穿何衣服? 面貌若何?” 新道“三更時分, 四人皆在船中沈睡, 忽衆賊將船抽出江心, 一人七長八大, 穿青衣, 涂臉, 先上船來, 忽三只小船圍住, 寧龍住僕見賊上船, 驚走船尾, 跳入水中, ……” ……貴道“三更時分, 賊將船抽出江心, 四面小船七八只俱來圍住, 有一厚生身穿紅衣, 跳過船來將寧龍二人丟入水中, ……”))20)

包拯의 분리 심문에도 두 죄인은 완강히 범죄를 부인한다. 결국 包拯은 직접 배로 가서 수사에 착수해 배 밑에 있는 의복과 두상자의 은을 찾아내 다시 문초하나 여전히 죄인들은 자백하지 않는다. 이때 寧龍이 상자 안에 鼎자로 표시를 해놓았다고 하여 그들의 죄상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며, 2인은 사형에 처해진다.

위 두 단편 공안소설 〈判石牌以追客布〉〈夾底船〉을 통해 ‘公案’ 어휘의 訴訟事件으로서의 개념을 명확히 살펴 볼 수 있다. 두 작품은 모두 목욕으로 야기된 竊盜와 謀殺事件으로, 訴訟事件으로서의 기본 구조를 지니고 있다. 訴訟事件으로서의 기본 구조, 즉 사건 발생 - 소송제기 - 판관의 사건 심리(사건 수사과정) - 판결 의 틀이

19) 《包公案》(北京, 北京燕山出版社, 1996), 40쪽

20) 《包公案》(北京, 北京燕山出版社, 1996), 40-41쪽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이상 '訴訟事件'이라는 '公案'의 어휘 개념을 중심으로 《百家公案》《龍圖公案》속 편의 작품에서 '公案'의 구체적 개념과 그 내용 전개에 접근해 보았다. 앞에서 언급한 기록들과 문학 작품속 내용을 바탕으로 '公案'의 개념을 정리하면, '公案'은 본래 관부에서 사건을 심리할 때 사용하던 책상, 관부의 공문서라는 의미를 지녔으나, 후세에 점차 民事事件·刑事事件을 포함한 告訴事件·訴訟事件을 뜻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Ⅲ. 公案小說의 起源

앞서 살펴 본 '公案'의 概念을 바탕으로, '公案小說'은 각종 民事·刑事 訴訟事件을 중심 소재로 취하는 소설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公案小說'은 사건 해결자인 淸官의 각종 사건 해결과정과 판결을 묘사하고, 그것을 통해 현실사회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公案小說은 내용적 측면에서 案情(사건의 내용이나 경위)의 묘사와 斷案(안건 판결)의 묘사로 양분할 수 있으며, 斷案은 破案(형사 사건 해결, 진범을 잡는 것)과 判案(판결 내리는 것)의 두 부분을 포함한다. 현존하는 宋代 公案小說을 살펴보면, 어떤 소설은 案情의 묘사에 치중하여 斷案과정은 매우 간략하다. 이런류의 소설은 약간 기이하며 중대한 사건과 사회문제를 주 소재로 삼았다. 斷案에 중점을 둔 경우는 案情묘사를 소홀히 했으며, 前者에 비해 수량이 많고, 다시 判案에 치중한 것과 破案에 치중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案情과 斷案을 모두 중시한 소설들도 있어서 내용이 매우 충실하고 즐거리가 정교하나 수량이 극히 적다.<sup>21)</sup>

형식적 측면에서 公案小說을 살펴보면, 訴訟事件이라는 점에서 몇 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즉, 사건발생, 소송, 사건심리, 판결 등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訴訟事件이 작품의 전체 흐름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론상 모든 公案類 소설이 이런 단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완전한 모습을 갖춘 작품은 드물다.

公案小說이 두 가지 내용 중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느냐는 문제와 형식적 측면에서의 절차여부에 상관없이 소설 속에서의 사건 해결주체는 관리, 즉 淸官이다. 봉건 전제주의 하에서 중국의 일반 백성들은 부당한 억압세력을 제어하고, 자신들의 억울

21) 黃岩柏 《公案小說史話》(沈陽, 遼寧教育出版社, 1992), 1-3쪽

함을 해결해 줄 청렴하며 강직한 관리에 대한 기대감을 지니게 되어 '清官'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들의 기대감이 바로 '清官思想'<sup>22)</sup>으로 연결된다. 이 부분에서는 公案小說의 起源과 더불어 초기 公案故事속에 그려진 清官들을 살펴보겠다.

公案小說의 起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公案小說은 언제 발생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公案小說 발생의 각종 요소 규명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일찍이 先秦兩漢時期에 통치자는 이미 刑法體系와 소송제도를 만들었고, 이 兩者는 公案小說 발생의 정치적 요소가 되었다. 公案小說의 주제사상은 바로 형법과 소송의 사상성 구현이며, 公案小說 속의 이야기 줄거리는 곧 문학화된 소송과 정이다.

둘째, 先秦이래로 확고하게 법을 집행하고(執法如山), 강직하여 아첨하지 않으며(剛正不阿), 공정하게 사건을 심리하며(秉公審理), 법에 따라 사건을 판결하는(依法判案) 清官廉吏가 대거 등장하였다. 이는 公案小說 발생의 사회적 기초를 마련했으며, 또한 公案小說의 주인공-司法官吏形象(清官)을 만들어, 후대 公案小說에 그 본모기를 제공했다.

셋째, 先秦 諸子百家와 兩漢史傳속의 刑法, 소송과 관련 있는 고사들은 소재와 예술기교의 두 방면에서 公案小說 발생의 문학적 요소가 되었다.<sup>23)</sup> 특히 司馬遷《史記》〈酷吏列傳〉에 있는 張湯의 故事를 통해 公案性을 살펴 볼 수 있다.

장탕은 두현사람으로, 그의 부친은 장안의 현승이었다. 어느 날 부친이 외출하여 장탕이 집을 보게 되었다. 부친은 돌아와서 쥐가 고기를 훔쳐간 것을 알고 화가 나서 장탕을 매질했다. 장탕은 쥐구멍을 파서 고기를 훔친 쥐와 남은 고기를 찾아냈다. 그리고 쥐를 단핵하여 매질을 하고 소환해서 진술서를 만들고 심문하고 논고하여 쥐와 그 고기를 체포했다. 그는 판결문을 갖추어 대청에서 쥐를 책형에 처했다. 부친이 그것을 보고 그 문사가 노련한 옥리가 쓴 것과 같아 매우 놀랐다. 그는 곧 판결문 작성하는 것을 배우게 했다. (張湯者, 杜人也. 其父爲長安丞, 出, 湯爲兒守舍, 遷而鼠盜肉, 其父怒, 笞湯. 湯掘窟得盜鼠及餘肉, 劾鼠掠治, 傳爰書, 訊鞠論報, 并取鼠與肉, 具獄磔堂下. 其父見之, 視其文辭如老獄吏, 大驚, 遂使書獄.)<sup>24)</sup>

22) '清官思想'이란 청렴하고 올바른 관리가 나타나서 貪官과 土豪惡霸를 제재하고, 억울한 옥사를 풀어줄 것을 기대하는 의식 경향을 말한다. 이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착취와 억압을 받는 일반 민중의 생활로부터 출현한 民間의 理想의 표현이며 바로 이런 점에서 소설사상의 한 인물로서의 清官은 일반적으로 俠義人物들과 유사한 탄생배경을 갖는다. 그러나 清官에 대한 民間의 理想은 결코 일반민중들이 갖고 있던 진보적인 사상의 반영은 아닌 것이다. 즉 봉건 사회 속의 관리의 다수가 清官이라 하더라도 일반 민중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인 착취와 억압의 근본적인 모순은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清官思想은 진보적 또는 능동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姜周完 《三俠五義研究》(서울, 延世大學校大學院, 1993), 19-20쪽 참조

23) 曹亦冰 《依義公案小說史》(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98), 4-5쪽

장탕은 쥐가 고기를 훔쳐간 일로 부친에게 매를 맞자, 쥐와 고기를 찾아내서 쥐를 탄핵하여 매질하였으며 결국 판결문을 만들어 磔刑으로 쥐를 벌했다. 장탕의 행위는 표면상 어린아이의 유희성 놀이로 볼 수 있으나, 이 고사에는 '公案小說'의 법적 소송체계, 즉 사건발생, 고소, 사건심리, 판결의 법적 절차가 잘 갖추어져 있다. 또한 장탕은 법 집행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낸다. 이처럼 장탕의 기록은 완전한 소설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짧은 고사이지만 公案小說의 요소인 소송사건과 재판 진행과정, 법 집행자가 구비되어 있다.

위 세 가지 公案小說 발생 요소를 통해 '公案'이라는 제재가 작품 속에 채택되어 문학적으로 형상화되기 위한 기초를 다진 것이 바로 先秦 諸子百家와 兩漢 史傳文學을 통해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서 公案小說의 起源을 찾을 수 있다.

사실 公案小說의 原始的 起源은 神話傳說속에서 찾을 수 있다. 神話傳說 중에 범죄와 司法에 관한 故事는 매우 드물지만, 현존하는 자료들을 통해 '司法之神'인 獬豸와 '司法之聖'인 皋陶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다. 인간들은 黃帝時代의 獬豸가 性情이 충직하며 사람의 범죄여부를 판별할 수 있고, 몸에 지닌 뿔로 사악한 이와 범인을 보기만 하면 들이받는다고 여겼으며, 堯舜時代에는 司法을 주관하는 대신 皋陶가 등장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면 獬豸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한다.<sup>25)</sup> 兩者는 현실성이 결여된 상상 속의 형상으로 公案小說이 추구하는 정신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公案小說과의 직접 연관성은 찾아볼 수 없다. 완전한 소설로서의 모습은 갖추지 못했으나, '公案性'을 지닌 公案故事가 본격화 된 것은 先秦兩漢時期이므로, 이 時期에서 公案小說의 起源을 찾는 것이 합당하다.

특히 漢代의 대표적 史傳文學인 《史記》의〈循吏列傳〉,〈酷吏列傳〉에는 清官의 형상과 그들의 법의식, 법 집행 태도가 잘 드러나 있어 후대 公案小說 속 清官形象의 원형을 찾아 볼 수 있다.<sup>26)</sup>

24) 《史記》〈酷吏列傳〉

25) 黃岩柏 《公案小說史話》(沈陽, 遼寧教育出版社, 1992), 4쪽

26) 公案小說속의 清官形象은 몇 차례의 변화 과정을 거쳤다. 宋元話本, 우수한 元雜劇, 《明成化說唱詞話叢刊》의 작품, 《包公案》의 고사 안에서 清官은 백성들의 희망의 화신이며, 그들 이상의 구현이었다. 清官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청렴결백했으며, 근검하고 소박한 품격을 갖추는 등, 매우 理想化되었다. 元雜劇과 公案小說에는 또 다른 종류의 清官이 등장하는데 바로 神化된 清官으로 이들은 사회윤리도덕문제를 다루었다. 사건 해결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조사나 지혜에 의하지 않고 신적인 존재나 꿈, 귀신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清官形象은 점차 이상화, 공식화, 신격화되었다. (折獄斷案型) 明代에 이르러서는 清官形象이 큰 변화를 보였는데, 민간의 사건을 다루던 清官이 조정관리들의 忠奸에 얽힌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忠臣

《史記》의〈循吏列傳〉,〈酷吏列傳〉에는 5인의 循吏와 12인의 酷吏가 등장하며, 그들의 법 집행자로서의 면모가 잘 나타나 있다. 循吏의 사전적 의미는 '규칙을 잘 지키는 선량한 관리'이다. 循吏는 淸官이라 할 수 있고, 그들은 청렴하고 법을 집행함에 엄격하며 일반 백성을 보호하고 간악한 세력을 응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태사공 왈, 법령은 백성을 이끌기 위해 있는 것이며, 형벌은 간사하고 악한 것을 금지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문(법령)과 무(형벌)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선량한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수신하는 것은 관리가 법 집행을 혼란스럽게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직분을 다하고 이치를 따르면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데, 어찌 위엄이 필요하겠는가? (太史公曰: 法令所以導民也, 刑罰所以禁奸也, 文武不備, 良民懼然身修者, 官未嘗亂也, 奉職循理, 亦可以爲治, 何必威嚴哉?)<sup>27)</sup>

司馬遷은 법령과 형벌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무엇보다 법령과 형벌의 주재자인 관리의 집행태도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보고 있다.

〈循吏列傳〉에 등장하는 5인의 관리는 바로 孫叔敖, 子產, 公儀休, 石奢, 李離이다. 5인의 淸官으로서의 면모를 살펴보자.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위와 아래를 화합하게 만들자, 세상의 풍속은 대단히 아름답다워지고, 정치는 느슨하게 시행되고 금지하는 일은 없었지만, 관리들은 간사한 자가 없었으며 도둑도 생기지 않았다. (孫叔敖) (施教導民, 上下和合, 世俗盛美, 政緩禁止, 吏無奸邪, 盜賊不起.)<sup>28)</sup>

재상이 된 지 1년이 되자 소인배들의 경박한 놀이가 없어졌고 반백의 늙은이들은 무거운 짐을 나르지 않았으며 어린아이들은 발을 갈지 않게 되었다. 2년이 되자 시장에서 값을 에누리하지 않았고, 3년이 되자 밤에 문을 잠그는 일이 없어졌고, 길에서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았다. ...5년이 지나자 관리들은 척적(사방1척 크기의 나무판으로 군령을 기록한 것)이 쓸모 없게 되었고, 상복을 입는 기간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잘 지켜졌다. (子產) (爲相一年, 嚙子不戲狎, 斑白不提挈, 僮子不犁畔, 二年, 市不豫賈, 三年, 門不夜關, 道不拾遺, 四年, 田器不歸, 五年, 士無尺籍, 喪期不命而治.)<sup>29)</sup>

법을 준수하고 이치를 따르며 바꾸는 일이 없어서 모든 관리들은 스스로 올바르게 되

形象으로 바뀌었다. (除奸平叛型) 清代에 이르러 《施公案》이 출현했는데, 그곳에서의 淸官은 일반 백성을 진압하는 원흉으로 그려졌다. (滅盜平叛型) 齊裕焜主編 《中國古代小說演變史》(敦煌文藝出版社, 1990), 521-524

27) 司馬遷 《史記》〈循吏列傳〉

28) 司馬遷 《史記》〈循吏列傳〉

29) 司馬遷 《史記》〈循吏列傳〉

었다. 녹을 먹는 자는 일반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지 못하게 하고, 많은 봉록을 받는 자는 사소한 것도 받지 못하게 했다.(公儀休)(奉法循理, 無所變更, 百官自正, 使食祿者不得與下民爭利, 受大者不得取小.)<sup>30)</sup>

확고하고 정직하고 청렴하여 아침하거나 권세를 두려워하는 일이 없었다.(石奢)(堅直廉正, 無所阿避.)<sup>31)</sup>

법관에게는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형벌을 잘못 내렸으면 곧 형벌을 받아야 하며, 사형을 잘못 내렸으면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계서는 제가 가리워진 부분까지 심리하여 어려운 안건을 판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서 법관으로 임명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잘못 들어 사람을 죽였으니 그 죄는 죽어 마땅합니다.(李離)(理有法, 失刑則刑, 失死則死, 公以臣能聽微決疑, 故使爲理, 今過聽殺人, 罪當死.)<sup>32)</sup>

〈循吏列傳〉에 등장하는 孫叔敖, 子産, 公儀休, 石奢, 李離의 법의식은 바로 儒家의 법의식과 상통한다. 儒家는 禮義를 숭상하여 禮로 나라를 다스릴 것을 주장했다. 儒家의 대표자인 孔子의 법률사상을 살펴보자. 孔子의 정치이상은 바로 西周 禮治의 회복이었다. 「예가 붕괴되고 음악이 흐트러진(禮崩樂壞)」 시대에 생존했던 孔子에게 있어서 禮는 질서의 '大統一'을 의미했다. 孔子는 당시 혼란한 세상의 변혁을 위해서는 禮를 중심으로 통일적인 법률질서를 다시 건립해야 한다고 여겼다. 게다가 「관대함과 가혹함이 조화를 이루고, 먼저 교화시키고 후에 형을 가해야 한다.(寬猛相濟, 先教後刑)」는 도덕적 교화가 형벌보다 역량이 크고 효과적이라는 법률사상을 지녔다.<sup>33)</sup>

孫叔敖, 子産, 公儀休, 石奢, 李離는 유가적 법사상을 基調로 하여 가혹하게 법을 집행하지 않았고, 타인에게 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修身하여<sup>34)</sup> 그들에게 올바른 행동양식을 제공하는 도덕적이고 교화적인 법 집행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 5인에게는 후대 공안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청관의 執法如山, 剛正不

30) 司馬遷 《史記》〈循吏列傳〉

31) 司馬遷 《史記》〈循吏列傳〉

32) 司馬遷 《史記》〈循吏列傳〉

33) 馬作武 《中國法律思想史綱》(廣州, 中山大學出版社, 1998), 26-29쪽

34) 5인의 循吏중에서 石奢와 李離는 법 적용에 있어 사사로움이 없고 엄격했다. 石奢는孝와 忠사에서 갈등하다가 孝를 택하고 不忠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며, 李離는 자신의 그릇된 판결을 탓하여 石奢와 마찬가지로 목숨으로써 보상하는 과감한 행동을 보인다. 이들은 儒家의 治國의 기초이념인 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몸소 실행한 것이다.

阿. 清廉潔白. 教化的 能力등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酷吏列傳〉에는 12인의 관리행적이 그려져 있는데, 사전적 의미 그대로 '가혹한 관리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그들 중에는 후대 소설 속 酷吏形象의 전범이 된 이들이 있는 반면에 循吏와 마찬가지로 淸官으로서 청렴하게 일을 처리하고 법 집행에 사사로움이 없었던 이들도 등장한다. 사전적 의미의 酷吏와 〈酷吏列傳〉에서의 酷吏는 약간의 의미적 차이를 지니고 있다. 〈酷吏列傳〉에는 侯封, 郅都, 寧成, 周陽由, 趙禹, 張湯, 義縱, 王溫舒, 尹齊, 楊僕, 滅宜, 杜周가 등장한다. 이들은 당시 중앙 집권을 강조하고 법집행이 엄격했던 漢代사회가 만들어낸 인물들로, 漢 武帝때 활동했다. 漢 武帝의 시대는 봉건전제주의 체재를 공고히 했던 진시황의 시대를 능가했으며, 왕권강화와 중앙집권을 위해 다수의 酷吏를 대거 등용하여 법 집행을 엄격히 했다.

酷吏의 관리로서의 면모와 그들의 법 집행 태도를 살펴보자.

질도는 사람됨이 용감하고 기개와 힘이 있으며 공정하고 청렴했다. 그는 사사로운 편지를 받으면 열어보지 않았고, 남이 보내온 선물도 받는 법이 없었으며, 남이 의뢰하는 말을 들어준 적이 없었다. …질도는 홀로 엄하고 가혹한 법을 제일로 여겨 법을 적용할 때 귀족이나 외척을 가리지 않았다. (郅都) (都爲人勇, 有氣力, 公廉, 不發私書, 問遺無所受, 請寄無所聽. …而都獨先嚴酷, 致行法不避貴戚)<sup>35)</sup>

우가 승상의 속관이 되자 승상부 관리들은 그의 청렴함과 공평함을 칭찬했다. 그러나 주야부만은 그를 신임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조우가 악의가 없다는 것은 지금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시키므로 상급관부에서 일 할 사람은 못된다.” (趙禹) (禹爲丞相史, 府中皆稱其廉平. 然亞夫弗任, 曰: “極知禹無害, 然文深, 不可以居大府.”)<sup>36)</sup>

그가 부하관리들을 추천하며 그들의 장점을 내세워 칭찬하고 단점을 숨겨주려는 것이 이와 같았다. 기소된 안건을 주상이 엄하게 처벌하려 하면 장탕은 법을 치밀하고 엄하게 집행하는 감이나 사에게 맡기고, 만약 왕이 용서해 주려고 하면 죄를 가볍게 다스리고 처리하는 감이나 사에게 맡겼다. 또 처리할 안건이 권세있는 호족과 관련된 것이면 반드시 법조문을 교묘히 적용시켜 죄에 걸리게 했고, 권세없는 가난한 백성인 경우에는 때때로 황제에게 ‘법조문에 따르면 당연히 유죄이나 폐하께서 현명하게 헤아려 살피주십시오’라고 했다. 그래서 황제는 왕왕 탕의 말대로 풀어주었다. (張湯) (其欲鷹吏, 揚人之善蔽人之過如此. 所治卽上意所欲罪. 予監史深禍者: 卽上意所欲釋, 與監史輕平者. 所治卽豪, 必舞文巧詆. 卽下戶羸弱, 時口言, 雖文致法, 上財察. 於是往往釋湯所言.)<sup>37)</sup>

35) 司馬遷 《史記》〈酷吏列傳〉

36) 司馬遷 《史記》〈酷吏列傳〉

그의 통치방법은 매우 치밀하여 쌀·소금등의 관리를 비롯하여 그 밖의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자신의 손으로 했고, 현의 각 부분의 물품까지 관리하였으므로 현령과 현승이하의 관리들이 제멋대로 바뀌 움직일 수 없었다.(減宣) (其治米鹽, 事大小皆關其手, 自部署縣名曹實物, 官吏令丞不得擅搖)<sup>38)</sup>

酷吏들은 엄하고 가혹한 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나, 법 집행에 태도에 있어서는 청렴과 탐욕이라는 차이점을 보인다. 위에 언급된 인물들은 비교적 청렴하고 법 집행에 있어 사사로움이 없이 공정성을 보이는 법의 수호자들이다. 이들은 '법에는 성역이 없다.'는 법의식을 지니고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법을 적용했으며, 법 집행에 있어서 융통성을 보여 상황에 따른 법 적용의 기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 외에 탐욕과 냉혹함으로 특징지어지는 인물들을 살펴보자.

侯封은 가혹하고 방자했으며 공신들을 함부로 옥보였고, 寧成은 통치방법에 있어서 질도와 유사했지만 청렴함에 있어서는 뒤떨어졌다. 周陽由는 매우 교만방자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자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살려주었고, 미워하는 자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죽여버렸다. 義縱은 법 집행에 사사로움은 없었으나, 趙禹와 張湯이 법 집행에 있어 너그럽고, 법률을 정치에 잘 활용한 데 반하여 매우 잔혹한 인물이었다. 王溫舒는 교활한 관리들은 많이 처단했으나, 아침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권세가에게 영합하여 위세를 부렸으며 백성에게 관대하지 않았다. 尹齊는 죄인치형에 있어서 고귀한 신분이나 외적을 가리지는 않았으나 매우 냉혹해서 관리와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다. 사후 그에게 원한을 품은 이들이 그의 시신을 불태우려한 일은 그의 냉혹한 법 집행자로서의 면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楊僕 역시 尹齊를 그대로 본 따서 법 집행을 했다. 마지막으로 杜周는 법 집행이 邳都와 흡사했지만, 아침에 능했고 법을 너무 지나치게 적용했다.

위 8인은 법 집행에 있어서 지나치게 가혹하여 <循吏列傳>이나 <酷吏列傳>속 일부 인물들에게서 볼 수 있는 법 적용의 융통성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그들은 淸官의 정신적 면모가 배제된 인물들로, 후대 소설에 등장하는 酷吏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이상 <史記><循吏列傳>·<酷吏列傳>에 등장하는 관리들을 통해 그들의 淸官으

37) 司馬遷 <史記><酷吏列傳>

38) 司馬遷 <史記><酷吏列傳>



로서의 면모와 법의식, 법 집행 태도를 살펴보았다.

그들은 법의 집행자·주재자라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고, 일부는 인간적 면모나 법의 집행태도에 있어서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지만, 《史記》〈循吏列傳〉·〈酷吏列傳〉에 등장하는 관리들의 법적·정신적 면모는 후세 公案小說 속 清官 形象化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다.

#### IV. 맺음말

訴訟事件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公案小說은 중국 소설사상 제재 측면에서 참신함과 독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公案小說속에 드러나는 사건들은 개인적 이해 관계, 감정의 대립 혹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야기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公案小說의 주요 전개 원리는 현실적 갈등과 대립이며, 그 주요 전개원리를 통해 시대상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公案小說의 지향점이다.

본고에서는 公案小說 연구의 기초작업으로서 '公案'의 개념과 '公案小說'의 起源, 그리고 訴訟事件의 해결과 판결 주체인 清官의 원형을 살펴보았다.

'公案'이라는 명칭과 그 개념은 宋元時期의 여러 문헌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나, 개념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많다. 본고에서는 여러 문헌 속의 의미와 사전적 의미, 그리고 公案類 소설작품을 바탕으로 '公案'이란 본래는 관부에서 사건을 심리할 때 사용하던 책상이나 관부의 공문서라는 의미를 지녔으나, 후세에는 民事·刑事사건을 포함한 訴訟事件을 뜻하게 되었다고 개념정리를 했다.

나아가서 公案小說의 구체적 起源은 先秦 諸子百家와 兩漢史傳의 刑法獄訟에 있다고 전제하고, 漢代 史傳文學중 《史記》에서 후대 公案小說에서 맹활약을 펼치는 清官形象의 原形을 찾으려고 시도했다. 《史記》의 〈循吏列傳〉·〈酷吏列傳〉에 대거 등장하는 관리들은 그들이 활동했던 시대의 필요성에 의해 출현했으며, 그들은 법 집행, 법 수호에 있어서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엄격한 법률 적용을 정치 이념으로 삼아 나라를 다스렸으며, 법 집행 태도에 있어서 개인차를 보여 清廉과 貪慾으로 대별되는 그들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史記》에 등장하는 循吏와 酷吏들의 활약상은 법이라는 이념추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前者는 가혹한 刑의 적용보다는 교화적 태도가 두드러지며, 後者는 법의 수호자로서의 강한 면모가 양면성을 띠며 나타나고 있다. 결국 兩者의 긍정적·부정

적 측면은 모두 후대 '公案小說' 속 清官의 形象化에 있어서 정신적 풍모와 행동양식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 【參考文獻】

- 《辭海》合訂本 中華書局, 香港, 1988  
《包公案》北京燕山出版社, 北京, 1996  
《漢語大詞典》第二卷 漢語大詞典出版社, 上海, 1993  
姜周完 《三俠五義研究》 延世大學校大學院, 서울, 1993  
馬作武 《中國法律思想史綱》 中山大學出版社, 廣州, 1998  
孟元老等著 《東京夢話錄》(外四種) 文化藝術出版社, 北京, 1998  
明 安遇時編集 朴在淵 校注 《百家公案》 江原大學出版部, 春川, 1994  
苗懷明 〈清代公案俠義小說與清代中後期大眾文化心理〉 《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 1999年 第3期  
範忠信·鄭定·詹學農共著 李仁哲譯 《中國法律文化探究-情理法과 中國人》 一潮閣, 서울, 1996  
司馬遷 《史記》 商務印書館, 臺灣, 1968  
司馬遷 《史記》 中州古籍出版社, 1994  
司馬遷 《史記》(三家注) 洪氏出版社, 1974  
徐連達·吳浩坤·趙克堯 중국사연구회역 《중국통사》 청년사, 1992  
蕭相愷 《宋元小說史》 浙江古籍出版社, 杭州, 1997  
王俊年 〈俠義公案小說的演化及其在晚清繁盛的原因〉 《文學評論》, 1992, 4期  
張國風 《公案小說漫話》 中華書局, 1989  
張 映 〈發跡變泰話本の '公案'性에 관한 新探〉 《中國小說論叢》 제3집, 1994.10  
齊裕焜主編 《中國古代小說演變史》 敦煌文藝出版社, 1990  
曹亦冰 《俠義公案小說史》 浙江古籍出版社, 杭州, 1998  
馮夢龍 《警世通言》 北京十月文藝出版社, 北京, 1995  
黃岩柏 《公案小說史話》 遼寧教育出版社, 沈陽, 1992

### 【中文提要】

公案小說是中國古代小說史上特有的概念, 是一種題材分類. 公案小說是甚麼? 公案小說起源於何時? '公案'是宋元話本的分類中一, 它爲人們普遍接受的話本分類名稱. '公案'有五種含義, 據《漢語大詞典》載: 一是官府案件文卷; 宋蘇軾

《辨黃慶基彈劾札子》：“今來公案，見在戶部，可以取索案驗。”二是案件，有糾紛的事件：宋 劉克莊《賀新郎·送陳子華赴眞州》詞：“北望神州路，試平章這場公案，向誰吩咐？”三是官府處理公事時用的儿案：元無名氏《陳州糶米》第四折：“快把公案打掃的乾淨，大人敢待來也。”四是話本·戲曲·小說的分類之一：宋 灌圃 耐得翁《都城紀勝·瓦舍衆伎》：“…說公案皆是搏刀趕棒及發跡變泰之事。”五是佛教禪宗指前輩祖師的言行範例：宋 陳善《捫虱新話·讀書當講究得力處》：“古書中頗有贅說處，便是禪家公案，但今人未嘗體究耳。”

‘公案’的中心含義是‘案件(獄訟)’，所謂‘案件’指的是各種民事案件和刑事案件。明清時代的公案小說集《百家公案》·《龍圖公案》中有很多這種獄訟故事。

公案小說起源于先秦的諸子百家，兩漢史傳，特別是兩漢史傳中《史記》有獄訟故事和清官形象。

《史記》〈循吏列傳〉中寫張湯審判鼠盜肉案的故事，在這裏有獄訟的法律體系。

《史記》〈循吏列傳〉·〈酷吏列傳〉中有執法如山，剛正不阿，清廉潔白的清官形象，所謂清官主要指那些清正廉明，秉公執法的政府官員，從歷代文學作品的描寫看，清官的不畏強權，扶弱抗暴，公正執法的品格尤其受到關注和稱揚。